교원창업 규정

제정 2006. 04. 01
제1차 개정 2018. 05. 18
제2차 개정 2021. 01. 29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 창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한다.
2. "창업관련 활동"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창업에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 소속된 모든 전임교수를 말한다. (조변경 2021. 01. 29)

제3조 (기본원칙) ① 교원의 창업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창업 또는 창업 관련 활동을 하는 자는 대학으로의 재정적 기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변경 2021. 01. 29) (개정 2021. 01. 29)

제4조 (신청자격 및 허용기간)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창업 또는 창업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전임 교원으로 한다.

② 창업 또는 창업관련 활동을 원하는 교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창업한 교원은 당해 기업이 청산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다시 창업할 수 있다.

④ 교원의 창업 겸직·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특별히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 후 총장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05. 18)

⑤ 신청자는 연장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05. 18)

제 2 장 창업절차

제5조 (신청서의 제출) ① 창업하려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실험실 창업(겸직)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창업으로 인한 소속 학과(부)의 강의 등 예상되는 교육공백에 대한 조치내용(개정 2021. 01. 29)
3. 창업시 대학에의 재정적 기여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4. 기타 사항(산업 기술개요 및 사업화 타당성 등) (개정 2021. 01. 29)

② 창업관련 활동을 하려는 교원은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겸직 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회사 임명장
3. 창업시 대학으로의 재정적 기여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개정 2021. 01. 29)
4. 재정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회사소개서
5. 기타 사항

제6조 (심의 및 승인)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위원회는 창업 또는 창업관련 활동을 하려는 교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창업 및 창업관련 활동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7조 (협약체결) 창업희망 교원은 승인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창업관련 기술
2. 창업 및 운영관련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공간, 시설, 실험기기 등)
3. 창출된 부가가치의 일정분에 대한 주식매입 선택권(stock option) 대학부여, 로열티 지불 등 환원계획
4. 기타 소속부서 업무공백의 보완 등 창업관련 필요사항

제8조 (창업의 실행) 창업을 승인받은 교원은 승인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창업교원의 의무

제9조 (소속부서 업무공백의 보완) 창업 또는 창업관련 활동을 하는 교원은 창업활동에 따른

소속학과(부)의 **강의 등 예상되는 교육 공백에 대처해야 한다.** (개정 2021. 01. 29)

제10조 (학생지도) 창업 또는 창업관련 활동을 하는 교원은 창업에 참여한 학생은 물론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의무) 창업한 교원은 창업신청서에 제출한 계획서에 의거하여 작성한 활동보고서를 매년 2월 28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원창업 기본원칙) ① 창업후 270일 이내에 회사의 형태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주식무상증여 또는 현금 일시납을 산학협력단에 해야 한다. (개정 2021. 01. 29)

② 성공기여료는 교원의 겸직·휴직기간 중 발생하는 창업기업의 회계연도 연매출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③ 회계연도 연매출 증빙자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세 확정 신고일 이후 1개월 이내에서 산학협력단에 납부한다.

구분	일반	자체 지원사업 수해시
법인사업자	기명식 보통주 3% 무상증여	기명식 보통주 5% 무상증여
개인사업자	- 5,000만원 주식회사 설립을 가정으로 자본금 3% 이상인 1,500천원 이상의 금액에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서 의결한 금액. 단, 추후 법인 설립시 주식 무상증여 규모는 1/2로 경감함.	
성공기여료	회계연도 총매출액의 2%	
	회계연도 총매출액이 10억 이상일 경우 총매출액 2%내에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액	

(개정 2021. 01. 29)

제13조 (승인 취소 및 징계) 총장은 창업 또는 창업관련 활동을 하는 교원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 승인을 취소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조 변경 2018. 05. 18)

1. 관련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이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경우

제 4 장 교원창업의 지원

제14조 (교원창업의 지원) ① 산학협력단은 교원창업의 성공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장신설 2018. 05. 18)

② 교원창업의 성공을 적극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원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지원내용에는 창업공간, 사업화지원, 교육·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지원프로그램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실시한다.

제 5 장 보칙

제15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의 관련규정과 기타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장 변경 및 조 변경 2018. 05. 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